

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내규 폐지내규안

1. 폐지이유

-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「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내규」는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본 내규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내규를 폐지함

3.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내규 폐지내규안

붙임과 같음

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내규 폐지내규안

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내규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416